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9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 민형배・이개호・소병훈

한준호 • 박지원 • 안도걸

김용민 · 이해민 · 김동아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 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 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

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 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 ③ (생	제12조(국무회의)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④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
	<u>성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⑤ 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